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이은림 운영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김 현 기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
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- 본 개정안은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위해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이 개정(2023.12.14.)됨에 따라
‘서울특별시의회정비심의위원회’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
기준에 맞춰 의정활동비가 1월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의정
활동비 지급 기준표와 부칙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!
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, 원안대로 의결하여
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